

자필유언장 양식

※ 민법 제 1066 조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(全文)과 연월일·주소·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.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경우는 무효입니다.

- 전문·연월일·주소·성명을 모두 본인이 손으로 직접 써야 합니다(자필).
- 성명을 쓴 다음 도장을 찍거나 지문을 날인해야 합니다.
- 타이핑, 대필, 녹음, 영상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이 양식은 작성 순서를 안내하는 초안용이며, 실제 유언장은 아래 내용을 백지에 전부 손으로 옮겨 써야 합니다.

유언 내용 (초안)

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. (예: 재산의 종류와 수증자, 비율 등)

연월일·주소·성명·날인

20 년 월 일 (자필로 직접 기재)

주소	
성명	

날인(인) : (서명 또는 인)

※ 이 양식은 초안 작성용입니다. 실제 유언장은 전문·연월일·주소·성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종이에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하여 완성하십시오. 타이핑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※ 유언의 효력, 유류분, 상속 관련 사항은 법률 전문가(변호사) 또는 공증인에게 확인하십시오.